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11 발의연월일: 2025. 3. 13.

발 의 자 : 임이자 • 유용원 • 우재준

김장겸 • 김소희 • 김위상

김용태 · 신성범 · 이상휘

안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, 살인, 강도, 폭행,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살인의 죄, 상해와 폭행의 죄,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「군형법」"을 "제24장(살인의 죄), 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, 제38장(절도와 강도의 죄), 「군형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퇴직급여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4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	
(외환의 죄), <u>「군형법」</u> 제2편	<u>제24</u> 장(살인의 죄),
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	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, 제3
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	8장(절도와 강도의 죄), 「군형
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	뭡
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	
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	
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	
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	
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